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64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최보윤·김상훈·신성범

최수진 · 서천호 · 임이자

김장겸ㆍ김 건ㆍ박성훈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 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 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 항).
-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인공지능의 활용) ① 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율성 · 정확성 · 일관성 · 예견 가능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작용의 용례를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대한 인공지능의 용례, 권익, 제4항에 따른 결정 및 주요 고려사항, 안전영향인공지능(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활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여부 등(이하 "용례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또는 공개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적절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보안관리조치
- 2. 해당 인공지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활용이 공정성 및 국민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공지능영향평가
- ④ 행정청은 권익영향인공지능(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결정에 활용되는 등 특정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는 경우 결정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공지능의 용례등의 제출 및 공개, 보안관리조치, 인공지능영향평가, 설명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있는"을 "있거나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인공지 등의 용례등을 공개한"으로 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청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3(인공지능의 활용) ① 행
	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u>효율성·정확성·일관성·예견</u>
	가능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작용의 용례를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대한
	인공지능의 용례, 권익, 제4항
	에 따른 결정 및 주요 고려사
	항, 안전영향인공지능(국민의
	<u>생명·안전·재산에 중대한 영</u>
	향을 미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활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해당여부 등(이하 "용
	례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또는 공개가 국가안 보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행정작용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보안관리조치
- 2. 해당 인공지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인 공지능은 제외한다) 활용이 공정성 및 국민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공지능영향평가
- ④ 행정청은 권익영향인공지능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결정에 활용되는 등 특정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는
 경우 결정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공지능의 용례등의 제출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 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 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 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2조(의견청취) ① ~ ⑥ (생략)

<신 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 저 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능영향평가, 설명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있거나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인공지능의 용례
등을 공개한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견청취)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행정청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
을 하는 경우 청문·공청회 또
는 의견제출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및 공개, 보안관리조치, 인공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경우
- ② (현행과 같음)